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무부령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중 “제25조”를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u>제25조</u>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 ----- <u>제25조</u> 까지, 제25조의2부터 <u>제25조의5</u> ----- ----- ----- ----- -----.